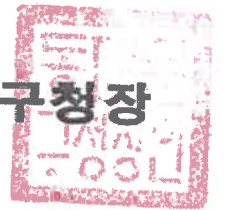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7. 30.

동대문구청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산6-52, 산6-54
- 다. 시 행 자 : 동대문구청장
- 라. 사업규모 : 516㎡
-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2. 보상대상 : 토지 2필지(516㎡)

3. 공고기간 및 공시송달 대상

- 가. 기 간 : 2019. 7. 30. ~ 8. 13.(15일간)
- 나.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동	지번				성 명	주 소
1	휘경동	산6-52	임야	476	476	양원 석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1-
2	휘경동	산6-54	임야	40	40	양원 석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1-

다.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을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협의(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나. 보상액산정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보상방법 : 당사자와 보상협의를 성립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말소 후 계약 체결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5. 기 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의 시기 및 공익사업 추진은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라.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건설관리과(☎02-2127-4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